

의장출원과 실물건본의 제작

의장출원을 하려면 반드시 실물건본이나 모형틀을 먼저 제작해야 하나?

의장출원을 하려면 출원서와 도면 또는 도면을 대체할 만한 사진이나 모형 또는 실물건본을 구비해야 한다. 의장출원시에는 출원할 고안이 완성되어야 하겠지만 반드시 실물건본이나 모형제작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투상도법에 의한 도면만을 제출하거나 도면을 대체할 만한 사진·모형 또는 실물건본도 제출할 수도 있다.

도면을 대체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다른 물품의 영상, 물품의 배경, 그림자 등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도면을 대체하여 모형 또는 실물건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지나치게 작거나 선명하지 않아서 의장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어서는 안되며 두께 1cm, 가로 15cm, 세로 22cm 이하의 것(얇은 포지 또는 지지틀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가로와 세로의 합이 200cm 이하)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 (1) 파손되거나 쉽게 변형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
-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한 것.
- (3) 용지에 첨부할 경우 쉽게 이탈될 염려가 없는 것.

의장등록출원의 변경출원

의장출원한 것은 특허 또는 실용신

안으로 변경출원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변경출원이란 출원대상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 최초 출원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출원의 형식을 바꾸는 것으로서 특허·실용신안·의장 상호간에는 변경출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장출원한 것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변경출원은 일정한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즉 출원인이 같거나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며



출원내용이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출원변경의 기초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또한 일정한 기간내의 출원이어야 한다. 이 기간은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변경출원이 불가능하며 또한 의장출원에서 특허출원으로의 변경은 의장출원일로부터 5년, 실용신안출원으로의 변경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변경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 및 출원료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일단 출원변경이 적법하게 수리되면 변경출원은 의장출원의 출원시까지 소급되는 효과가

있으며 의장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한벌물품의 의장출원과 단독의장출원

한벌의 물품을 의장으로 출원하려는데 이 경우 한벌물품 전체를 한꺼번에 출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물품 각각에 대하여 단독 의장출원을 해야 하는지?

한벌물품 의장이란 그 구성물품이 독립하여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2종 이상의 물품이 관행상의 요청에 의하여 한벌물품으로 판매되고 사용되는 것으로 한벌 전체로서 동일성이 있을 때는 하나의 의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필요하면 그 구성물품을 하나하나 독립하여 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 한벌물품의 의장은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심사의 번잡함을 피할 수 있으며 의장관리가 용이하다. 따라서 이들 양자중 어느 것으로 출원할 것인지는 그 경제적 효용성 등을 감안하여 출원대상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벌물품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의장은 의장을 표현한 물품이 한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한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의장 자체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록받을 수 있는 한벌물품의 예로는 한벌의 깃연용구 세트, 한벌의 커피세트, 한벌의 화채용 세트, 한벌의 반상기 등이 있다. **ST**